

처리부서명	일자리경제과
담당자명	
전화번호	

## 발전사업 허가증

1. 성명 (대표자) : [ ] 법인등록번호 : [ ]

2. 상호 : [ ]

3. 소재지 : [ ]

4. 사업의 내용 : 전기(태양광)발전사업

사업장소 : 구만면 [ ]

5. 사업규모

원동력의 종류 : 태양광 설비용량 : 699.84 KW

공급전압 : 22900 V 주파수 : 60 Hz

6. 특정공급구역 : 해당없음

7. 사업준비기간 : 2021년 12월 07일 ~ 2024년 12월 06일

8. 허가조건 : 관계부서 관련법령 검토의견 준수  
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선행  
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 완료

9. 기타 :

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.

2021년 12월 07일

고 성 군





## 고 성 군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 허가 알림(구만 화림-(주)솔라 [redacted])

1. 민원접수번호-[redacted]와 관련입니다.

2.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청인: ㈜솔라 [redacted]

나. 허가현황

용도 지역	위 치	지목	면 적(㎡)/ 발전용량(kw)			목 적	사업기간	
			허가면적/발전용량					
			건축면적	태양광설치 면적	발전용량			
계획 관리 지역	구만면	[redacted]	공	6,913.94	3,322	700	건물위 태양광 설치	2022.7.~ 2023.7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	구만면	[redacted]	공					

3. 의제처리사항: 해당없음

4. 관련 실과 및 읍면에서는 위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고성군 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4호 규정에 따라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는 반드시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야 하며, 지붕 바닥면에서 높이는 2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.

※ 설치기준 위반 시 개발행위 준공처리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사 시행 전 내용숙지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개발행위 허가조건 1부.

2. 의견검토서 각1부. 끝.

# 배전용전기설비이용 고객 신청 접수증명서

접수번호	5771- [ ]		계약번호	[ ]
발 전 사 업 자	고객명	(주)솔리 [ ]	상 호	제이 [ ]
	대인번호	[ ]	전화번호	[ ]
	주 소	지번	경상남도 고성군 [ ]	이용희망일
도로명		경상남도 고성군 [ ]	2022-09-20	

전기방식	840 삼상4선(22.9kV-y)	용도	04 역송병렬
이용장소	경상남도 고성군 [ ]		
계약전력	752	발전원	01 태양광
주생산품		설비유형	3 일반선로(한전)
고객구분	03 발전사업자	적용약관(규정)	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
전력거래형태	전력시장거래		
사 용 전 점 검 기 관	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	내선업체	(주)솔리 [ ]
시설부담금	1 표준시설부담금	공사형태	2 외선소요
설비관리자명	[ ]	연락전화	[ ]
SMS 수신번호	[ ]		

**※ 배전용전기설비이용 신청 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**

- 적용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배전용전기설비이용 신청을 합니다.
-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이용신청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됩니다.
- 접속점 협의 요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접속제외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속제외에 대한 수락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, 수락 의사 통지 후 2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.
- 계약전력 1MW 이하의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개발행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용량을 변경하여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(발전산업 허가용량 10% 이내 포함)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. 특히 설비용량을 증설하여 설치 할 경우 공사계획 신고 전 이용계약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변경 없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전설비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규정 72조에 의거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배전용전기설비이용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2022년 08월 26일

경남본부 고성지사장

(인)

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 공급인증서(REC) 매매계약서 [고정가격(선정)]					
구 매 자	상 호 명	한국남부발전(주)	사업자등록번호		
	대 표 자		전 화 번 호		
	주 소				
	계 약 자	판 매 자	발 전 소 명	(주)솔라	사업자등록번호
			대 표 자		전 화 번 호
			주 소		
설 비 현 황			에 너 지 원		설 비 용 량
	소 재 지				
	예 상 가 중 치		발전사업허가번호		
	설비코드 (최초/변경)		발전사업허가일		
계 약 내 용	계약종류/선정시기	고정가격(선정) / 2022년, 상반기		ESS 계약여부 [ ]	
	계약서 상의 계약일 (최초계약일)	2022년 10월 01일			
	계약기간	2022년10월 부터 ~ 2042년09월 까지			
	계약단가				
	공급인증서 매매량 (예상)	1,400REC/년 *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			
	계약보증금	금(일천일백사십일만일천) 원정(W11,411,000)			
	REC 매매방식	비율[v] [100]%			
<p>매수자와 매도자는 "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"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구 매 자 한국남부발전(주) 전자서명 판 매 자 (주)솔라 전자서명</p>					
계약보증증권	제출 [v] 면제 [ ]				
<p>* 필수 첨부서류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도자 : 설비확인서(별지포함), 사업자등록증, 발전사업허가증, 계약보증증권</li> <li>- 매수자 : 계약 일반조건/특수조건</li> </ul> <p>* 참고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, 일반(특수)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.</li> <li>2.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.</li> <li>3.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,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.</li> <li>4.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미준공(설비확인서 미발급)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.</li> <li>5.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.</li> <li>6.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부터 시작된다. 단,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.</li> <li>7.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,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/순차적으로 배분된다.</li> <li>8.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,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.</li> </ol>					

본 계약서는 한국전력거래소 REC시스템에서 생성된 계약서입니다.